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856호
- 나. 제안자 : 허 훈 의원(찬성자 27명)
- 다. 제안일 : 2024년 5월 27일
- 라. 회부일 : 2024년 5월 30일

## 2. 제안이유

- 총선 이후 폐현수막이 급격히 늘었지만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행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부처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6항 신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유동광고물 중 자치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 ⑤ (생략) <u>&lt;신설&gt;</u>  ⑥ (생략)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장은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나. 검토 내용

#### (1) 조례 개정안 검토

-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폐현수막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4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 중 현수막의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유동광고물"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시장·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 현행 조례 제28조의 '불법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제거 및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최소한도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sup>1)</sup>와 제41조에 따라 시장등은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 또는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sup>2)</sup>에 따라 반환하지 않은 광고물등은 시와 자치구에 귀속됨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 1)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군·구에 귀속된다

제거 또는 수거하여 시와 자치구에 귀속된 불법 현수막의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다만,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거 또는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만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포괄적인 범위에서 폐현수막의 자원순환을 위한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 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5호 생략)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주체 검토

- 행정안전부는 수거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sup>3)</sup>

3) 「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관계부처 협동 보도자료, 2024.04.08.)」  
○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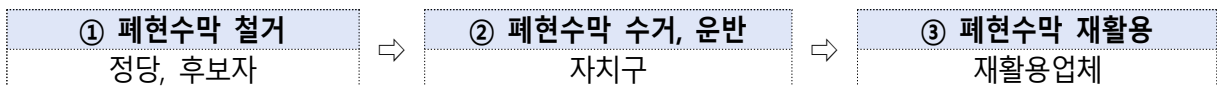
(‘24.04.08.)하였으며, 서울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24년 총선 등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24.03.28, 자원순환과-4982)’을 수립하여 총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 '24년 총선 등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 >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
- 사업기간 : '24. 4. ~ '24.12.
- 사업내용
  - 선거로 인한 폐현수막 증가 및 일부 자치구의 낮은 재활용률 등을 고려할 때 폐현수막 장바구니, 마대 등의 제작, 사용 장려
  - 폐현수막은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로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폐현수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용 체계를 수립할 필요 있음
- 폐현수막 발생현황
  - 폐현수막 발생량은 평시('23년) 188톤이나, 선거가 포함된 연도('22년)에는 236톤으로 20.3% 급증 현상 발생

구분	발생량	처 리 방 법					
		매립	소각	자체재활용	재활용소재화	보관	기타 (고형연료,무상배부)
'22년	236.3	18.2(7.7%)	94.8(40.1%)	42.5(17.9%)	3.8(1.6%)	31.6(13.4%)	45.4(19.3%)
'23년	187.9	36.5(19.8%)	97.2(51.7%)	30(16.2%)	-	8.5(4.6%)	15.7(8.3%)

#### ○ 폐현수막 처리절차



#### ○ 현수막 철거·수거 방법

- ①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 및 관할 지자체에 수거요청
  - ※ 철거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② 정당 및 후보자 요청에 따라 철거된 현수막을 자치구에서 수거 의뢰
- ③ 수거된 현수막은 재활용업체에 무료 제공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재활용

○ 서울시(자원순환과)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 제11조제3항4)에 따라 폐현수막을 철거·수거하여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현수막

를 진행 중에 있고, 4월 중 사업비를 지원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1.5억원 지원)하여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2,709개,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한 바 있다.
-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예정이다.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폐기물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sup>5)</sup>에 따라 현수막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또는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미 「폐기물 조례」에 근거하여 폐현수막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24년 총선 등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의 관련기관 협조사항에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경관담당관으로 ‘정당 폐현수막 재활용 등 적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환경부 합동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담당부서 또한 도시경관담당관 이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거 또는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현수막의 친환경적 재활용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판단됨

### (3)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검토

- 부산광역시 북구와 공주시는 각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중 ‘제거된 광고물등의

---

4)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5) 「폐기물관리법」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관리 등' 조항에서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 또는 재활용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거된 불법 옥외 광고물 중 폐현수막 처리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소각처리방식 대신 재활용 시책마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음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p>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⑤ (생략)                      ⑥ 시장은 <u>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u>하여야 한다.</p>	<p>제23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u>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활용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u>할 수 있다.</p>

- 부산광역시 서구도 「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시행(2024.05.16.)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2023.12.26.)하고 있음. 이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지원, 교육 홍보 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다. 종합 의견

-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폐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합동 지방자치단체 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거 또는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수거한 현수막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폐기물 조례」 제11조제3항<sup>6)</sup>에 따라 “24년 총선 등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폐기물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사업등을 지원 또는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폐현수막을 포함한 포괄적인 폐기물처리사업등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거 또는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

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판단됨

- 마지막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궁극적인 목표인 폐현수막의 친환경적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과주시와 같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자원순환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할 것임

## □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제3항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 제10조(시민참여)

-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4. 4. ~ '24.12.

#### ○ 사업내용

- 선거로 인한 폐현수막 증가 및 일부 자치구의 낮은 재활용률 등을 고려할 때 폐현수막 장바구니, 마대 등의 제작, 사용 장려
- 폐현수막은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로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폐현수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용 체계를 수립할 필요 있음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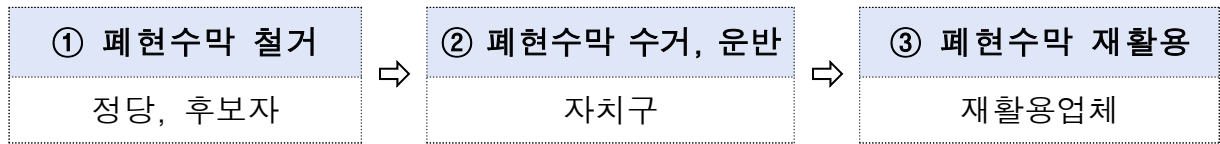
#### ○ 폐현수막 발생현황

- 폐현수막 발생량은 평시('23년) 188톤이나, 선거가 포함된 연도('22년)엔 236톤으로 20.3% 급증 현상 발생

(단위 : 톤/년)

구분	발생량	처 리 방 법					
		매립	소각	자체재활용	재활용소재화	보관	기타 (고형연료,무상배부)
'22년	236.3	18.2(7.7%)	94.8(40.1%)	42.5(17.9%)	3.8(1.6%)	31.6(13.4%)	45.4(19.3%)
'23년	187.9	36.5(19.8%)	97.2(51.7%)	30(16.2%)	-	8.5(4.6%)	15.7(8.3%)

## ○ 폐현수막 처리절차



### 공직선거법

####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 ○ 현수막 철거·수거 방법

- ①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 및 관할 지자체에 수거요청  
※ 철거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② 정당 및 후보자 요청에 따라 철거된 현수막을 자치구에서 수거 의뢰
- ③ 수거된 현수막은 재활용업체에 무료 제공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재활용

## □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

### ○ 시민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폐현수막 소재 장바구니 및 에코백 등을 제작하여 시민 무료 배포 및 농사용 막 무료 배포
- 사업 규모 : 장바구니, 에코백 등 6,950개(종로, 성북, 강북, 은평, 송파)



○ 자체 재활용

- 사업 내용 : **재활용정거장 마대**를 폐현수막  
마대로 제작 및 사용하여 폐현수막  
재활용률 향상
- 사업 규모 : **2,850장**(종로, 은평, 영등포, 송파)



○ SRF(고형연료제품) 처리

- 사업 내용 : 소각에 필요한 필수 열량을 충족  
시키기 위해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화 처리(**고형연료화**)
- 사업 규모 : **20톤**(폐현수막 33,333장, 노원)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정당 폐현수막 재활용 등 적정 처리 협조 요청(市 도시경관담당관)**

- 선거 종료 후 현수막 자진 철거 및 처리 시 재활용 적극 독려

○ **폐현수막 수거 및 적정 처리(區)**

- 선거 현수막 : 정당에서 미 철거한 현수막 철거 후 정당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금으로 재활용비용 충당 등)
- 평시 현수막 :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화 시민 배포, 재활용정거장 마대  
제작 및 사용, SRF 처리

※ 재활용 예산 미비 자치구는 기존 소각 처리비용을 재활용 비용으로 전환 사용 검토

○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화(서울새활용플라자)**

-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새활용기업이 요구시 안정적 공급(약 4,800장 수용 가능)  
※ 폐현수막 소재화를 위해서는 **각목·노끈 분리 및 오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 방안 실무자 회의 및 교육(市 자원순환과)**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소재화 과정 및 새활용기업과 연계한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 안내
-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 방안 유관기관 **협의회의 추진**
- 폐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선 순환체계 교육**

□ 행정사항

- '24년 폐현수막 적정 처리요청(시 → 자치구) ..... '24. 3.25.
- 총선 기간 폐현수막 처리 실적 제출(자치구 → 시) ..... '24. 6.15.
- '24년 폐현수막 처리결과 제출(자치구 → 시) ..... '24.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파주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

걸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과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